

세무회계저널
제6권 제4호 2005년 12월 pp.33~56
한국세무학회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상 개선방안*

— 종교단체회계지침(안)의 제정을 위한 연구 —

김광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조직 중 종교단체의 통일된 종교단체회계지침(안)을 제정하기 위해 다음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영리법인과 다른 비영리법인인면서, 동시에 다른 학술·복지·의료·문화단체와도 다른 종교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상 과제를 도출한다. 둘째, 종교단체의 회계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정하는데 지향해야 할 개선방향과 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종교단체의 폐쇄성으로 인한 표본의 편중과 임의성을 고려하여 설문조사하지 않고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주로 하였으며, 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 단체의 회계책임자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종교단체회계제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정부의 주무부처차원에서 종교단체의 공익성을 감안한 회계감독 관련규정이 불충분하다. 둘째, 불교단체의 회계는 단식회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셋째, 개신교 교회의 회계처리는 원칙적으로 복식회계방식에 의하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하지 아니하는 수정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넷째, 천주교는 복식회계를 행하면서도 회계기준은 미비하였다.

상기 문제점에 대응하면서 문헌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 구체적인 종교단체회계지침(안)을 제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현행 종교단체 회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둘째, 한국회계연구원의 비영리회계지침을 반영한다. 셋째, 선진 외국인 미국과 일본의 비영리조직 및 종교단체의 회계지침을 고려한다. 넷째, 개신교(예장)의 교회회계기준을 반영한다. 다섯째, 실정 세법의 비영리법인 관련 규정을 가능한 한 고려한다. 여섯째, 최근 공표된 공공부문의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안)을 반영한다.

이상의 결과를 반영한 종교단체회계지침(안)을 제안하였다(전문 62조 부칙 3조).

〈주제어〉 비영리회계, 종교단체회계, 종교회계

* 본 연구는 아주대학교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kimkyn@ajou.ac.kr, 011-9279-4883

I. 서론

1970년대 이후 양적 성장과 함께 비대화와 배타성 등 왜곡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발굴하는 정답시리즈를 “기독교사상”지의 특별기획으로 시도한 후 이를 편집하여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책을 낸 한완상(1988, 193-201)은 문제 중 하나로 헌금의 징수와 관리 건을 제시하였다. 즉, 헌금은 십일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등 모두가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에 대한 응답으로 자발적·이성적으로 납부되어야 하고, 그 용도는 건물 확장 보다는 사전 계획에 의한 선교·구제 사업에 쓰되 교회는 그 결과를 안팎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후 1997년 말 금융위기 이래로 영리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문제로 된 것과 함께 정부·학교·사회단체 등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역시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교회·성당·사찰의 재정상 의혹사건이 불거지면서 “복마전” 운운하며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본래 종교단체는 신도의 교화·선교·전도·기타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므로 영리조직이 아닌 비영리조직이다. 원칙적으로 고유목적 사업에 속하는 한 비과세하여 세무당국의 감시도 받지 않으며, 법인체가 아닌 한 주무부처(문화관광부)의 인·허가도 받지 않으므로 관청에 보고의무도 지지 아니하고, 모두 자율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각종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 천주교, 기독교(신교), 불교 등 각 종교계의 비리사건은 그 중심에 공금횡령, 부당지출, 배임 등 회계비리가 은연 중 개재되어 있다. 이들 사건의 여파는 당해 종교단체나 성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성소이자 목탁기관의 부패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의 실망을 초래하는 측면이 매우 컸던 불행한 일이다.

종교단체의 회계처리기준 제정에 대한 입장은 미국처럼 비영리조직 일반의 회계 지침만 제시하는 일원적 접근법(single dimension approach)과 일본처럼 비영리공익법인의 회계지침과 별도로 종교단체 회계지침을 제정하는 다원적 접근법(multiple dimension approach)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학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이미 각각의 회계지침(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보건복지부령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다원적 접근법을 택하여 실효성 있는 별도의 종교단체 회계지침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요구는 종교단체와 공인회계사회 등 실무계 뿐만 아니라 일찍이 종교단체의 회계를 연구해 온 학자들(이옥영 1987; 최현돌·황호찬 1998; 조현연 2004 등)이 이구동성으로 내부통제제도의 구비, 예산제도의 활성화, 감사제도의 개혁, 통일된 회계기준의 제정 및 시행, 그리고 재무제표의 공시 등이 긴요하다고 한데서도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에 통일된 회계기준의 제정·보급을 위한 심층적·포괄적 연구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영리법인과 다른 비영리법인인면서, 동시에 다른 학술·복지·의료·문화단체와도 다른 종교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상 과제를 도출한다.

둘째, 종교단체의 회계지침(안)을 구체적으로 제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개선방향과 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교단체의 유형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신도수와 교단 측면에서 주종을 이루는 기독교의 개신교와 천주교, 그리고 불교의 3개 종교단체를 주 대상으로 하였다. 회계실체로서 종교법인을 상정하였으나, 각 말사, 개(지)교회, 본당의 경우 민법상 법인격은 없으나, 세법상으로는 신도가 출연한 헌금을 바탕으로 종교단체명의로 취득한 예금·부동산 등 기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간주하므로(재무부 예규 1976. 12.7. 총괄 1231-3051; 이옥영, 1991, 24-25에서 재인용) 이를 모두 포괄하는 종교단체의 회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종교단체의 폐쇄성으로 인한 표본의 편중과 임의성을 고려하여 설문조사하지 않고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주로 하였으며, 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 단체의 회계책임자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 조사하였다.

연구 내용은 우선 비영리조직으로서 종교단체의 현황과 종교회계 관련 선행연구, 그리고 주요 종교단체의 회계제도 실태를 개관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한 후 종교단체의 회계적 특성과 2003년 4월 발표된 한국회계연구원의 일반적인 비영리회계지침을 일별하였다. 이어서 미국, 일본 등 선진 외국의 종교단체회계제도를 고찰한 뒤,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반영한 종교단체회계지침(안) 제정을 위한 개선방향과 함께 구체적 지침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필요한 정책 제안을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종교단체의 현황

종교단체의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의 소관 법인현황을 보면 <표 1>에서와 같이 2003년 7월말 현재 종교법인수가 재단법인 258개와 사단법인 191개로 합계 449개로 파악되고 있다.(법인으로 정식 인가·등록된 것에 국한하므로 국세청 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표 1〉 문화관광부소관 법인현황총괄

(단위 : 개)

구 분	특수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법인		지방문화원	계
				재단	사단		
계	24	131	511	258	191	216	1,331
종무실				258	191		449
문화정책국	3	31	79				113
예술국	2	56	188			216	462
문화산업국	14	29	129				172
관광국	1	1	26				28
체육국	2	3	40				45
청소년국	2	2	22				26
문화재청		9	27				36

자료 : 문화관광부, 2004. 8.(2003. 7. 31. 현재 조사치임)

이를 종교별로 보면 <표 2>와 같이 법인 수에 있어 개신교가 213개(47.4%), 불교가 111개(24.7%), 천주교가 78개(17.4%)의 순서로 나타났으나, 신도 수에 있어서는 <표 3>의 10년 주기 통계청 센서스 자료에서 보듯이 불교(총인구 대비 23.2%), 개신교(19.7%), 천주교(6.6%)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 종교별 종교법인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종교별	재단법인		사단법인		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법인수	구성비
개신교	112	43.4	101	52.4	213	47.4
천주교	68	26.4	10	5.2	78	17.4
불 교	46	17.8	65	34.0	111	24.7
유교(향교)	17	6.6	4	2.1	21	4.7
기타 종교	15	5.8	11	5.8	26	5.8
계	258	100	191	100	449	100

자료 : 문화관광부, 2004. 8.(2003. 7. 31. 현재 조사치임)

〈표 3〉 종교별 신도수 현황

(단위 : 명, %)

종교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기타 종교	합계
신도수 (총인구대비)	10,321,012 (23.2)	8,760,336 (19.7)	2,950,730 (6.6)	210,927 (0.5)	28,184 (0.1)	86,823 (0.2)	239,812 (0.5)	22,595,824 (50.7)

자료 : 문화관광부, 2004. 8. (1995. 1. 현재 통계청 센서스자료에 근거한 것임)

2. 종교단체의 회계적 특성

종교단체가 비영리조직이면서도 신앙생활을 주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몇 가지 회계적 특성을 가진다.

박충환(2003)은 종교회계의 특징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 ① 종교활동을 위한 교화·선교·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 또는 종교법인을 회계실체로 하여 성립되는 회계이다.
- ② 종교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이다.
- ③ 교인 등으로부터 경제적 자원의 사용·관리를 수탁 받은 종교단체 또는 종교법인의 경영자가 그 자원을 위탁한 개인 또는 사회에 대하여 실행 이행의 보고를 하는 회계이다.

양대석(2003)은 기독교를 전제로 한 교회회계의 특성을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 ① 영적인 생활과 성장을 추구하는 회계이다.
교회회계를 잘 수행하여 영적 가치세계의 질적 측면을 물량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교인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이를 통해 재정수입이 늘어 외적 합리성과 내적 진실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 ② 예산에 의한 계획적 활동이다.
교회의 예배, 전도, 교육, 봉사 등 모든 활동 방향을 예산에 의해 사전 관리하며 부득이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분회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 배당 등의 잉여금처분 회계는 불필요하며 하나님 소유물에 대하여 청지기정신으로 기본금(순자산)의 증감 파악만 하면 된다.
- ④ 이익 이외의 방법으로 성과를 측정해야 하는 특수회계이다.
영리기업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예배, 선교, 교육, 사회봉사(구제) 등 교회활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였는지를 지출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정신적 편익을 주석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옥영(1987)은 현대 교회회계가 갖추어야 할 기능을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 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계이어야 한다.
- ② 성도에게 만족을 주는 회계이어야 한다.
- ③ 치리자에게 유용한 회계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회계이어야 한다.
- ④ 역사적인 기록을 할 수 있는 회계이어야 한다.

요컨대 종교회계는 종교 단체의 활동을 내외부의 종교단체 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는 회계영역으로서, 신도들로부터 예산에 근거한 헌금과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되 사적 지분의 매매·교환·상속·배당 등이 없으며 믿음·소망·사랑이라는 종교 보편의 진리에 입각하여 당해 종교 단체의 신도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공공성을 제고해야 하는 비영리회계라 하겠다.

3. 선진국의 종교단체 회계제도 고찰

가. 미국의 종교단체 회계제도

미국은 단일의 종교단체 회계지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비영리조직 일반에 대한 회계기준서를 적의 조정하여 종교단체에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조직을 크게 ①자발적 건강복지조직 및 기타비영리조직(voluntary health and welfare organization and other nonprofit organization, 이하 VHWO와 ONPO로 각각 칭한다), ②대학(colleges and universities) 그리고 ③의료기관(health care organizations)의 세부류로 분류한다. VHWO는 사회의 복지 또는 기타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으로서 보이 스카웃, 걸 스카웃, YMCA, YWCA,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등이 이에 포함된다. 반면에 ONPO는 자발적 건강복지조직, 대학 또는 의료기관이 아닌 그 밖의 모든 비영리조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공동묘지(cemetery organizations), 시민단체(civic organizations), 도서관, 박물관, 각종 문화기관, 예술공연단체(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정당, 사립초등 및 중·고등학교, 각종 전문가단체(professional associations), 종교단체, 연구기관 등을 들고 있다(배길수·정석우·박충환, 2000).

또한 비영리조직은 설립의 주체가 민간인지 아닌지에 따라 민간비영리조직(private or nonpublic nonprofit organization)과 공공비영리조직(public or governmental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분류된다. 결국 오늘날 미국의 종교단체(위 ONPO의 일종)에 대한 회계지침은 개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비영리조직에 두루 적용되는 FASB의 비영리회계기준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비영리조직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1960년대 이래 여러 단계를 두고 발전되어 왔다. 당초에는 이들 비영리조직의 필요에 의해 세부적인 계정과목 중심으로 자체적인 회계기준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AICPA는 이들 조직의 회계기준을 체계화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60년대 중반부터 이들 비영리조직의 회계기준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 후 FASB가 1979년 정부를 제외한 모든 비영리조직의 회계 및 재무보고 기준을 정립할 권한과 책임을 맡게 되면서 우선 SFAS 32를 발표하였다. SFAS 32는 1979년 현재 존재하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AICPA의 SOP(Statement of Position) 78-10과

AAG(Audit and Accounting Guide)¹⁾를 잠정적으로 비영리조직에 대한 공식적인 회계기준으로 인정하였다. 이후 AICPA는 SOP 94-3과 SOP 98-2를 추가로 발표하였다. 한편 FASB는 1980년 12월 SFAC No.4와 1985년 12월 SFAC No.6을 발표한 이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비영리조직의 회계 및 재무보고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여 오다가, 1993년 6월 SFAS No.116과 SFAS No.117을 공표하여 민간비영리기관에 대해 적용되는 회계 및 재무보고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SFAS No.116은 비영리조직에 특히 중요한 기부금수익의 인식기준이며, SFAS No.117은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서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한 기준이다. 아울러 FASB는 비영리조직에 대해 쟁점이 되어 온 감가상각에 관련된 기준인 SFAS No.93(1987)과 비영리조직의 투자자산(투자주식 및 채권)에 관련된 회계기준인 SFAS No.124(1995), 그리고 비영리조직에 대한 자산대체에 관련된 회계기준인 SFAS No.136(1999)을 제정하였다.

종교단체를 포함한 ONPO가 작성할 재무제표는 종래 기금회계별로 다양한 재무제표가 아니라 상이한 비영리조직 사이에 비교가능하고 용어도 일반에 익숙한 영리기업의 회계용어를 가급적 사용한 재무상태보고서(대차대조표), 활동보고서(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²⁾ 여기에는 자산, 부채, 순자산의 총액을 명시할 것과 순자산은 기부자가 가한 제약의 종류에 따라 제약 없는 순자산,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및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세 가지로 분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두 가지 요구 이외의 사항들, 예를 들면 자산이나 부채의 과목 명칭이나 배열 등의 구체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비영리조직 각각에 전적인 재량을 부여하였다.

나. 일본의 종교단체 회계제도

상술한 미국과 달리 단일의 종교법인회계지침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은 일찍이 1971년 11월 일본공인회계사협회 (종교법인회계전문위원회 소관)에서 “종교법인회계기준”(안)을 발표한데서 비롯되었다. 내용인 즉 이전까지의 재산목록과 자금수지계산서(예산 포함) 이외에 대차대조표, 자금잉여금조정계산서와 잉여금(부족금)처분계산서를 계산서류(필자주: 재무제표)로 작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단식회계로 일관되어 오던 비영리회계 가운데 경상적 경비에 공적보조를 받는 학교법인에게 감사가 도입되면서 그 전제로 학교법인회계기준이 1971년 4월에 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었다. 그러나 당시까지 복식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종교계에서는 복잡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였다.

그 후 공익법인의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리청의 권고를 받아 공익법인감독사무연락협의회가 1978년 4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제정 발표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하여 복식회계에 의한 회계투명성 요구가 사회전반에 확산되었다. 또한 1995년에 개정된 종교법인법에 따라 종교법인심의회가 설치되었으며 이 기구로부터 종교법인 재무회계서류의 용이한 작성기준 제시를 요청받은 일본

1) 종전의 Industry Audit Guide가 확장된 것이다.

2) 다만, VHWO(자발적 건강복지조직)에 대해서는 이들 세 가지 보고서에 추가로 활동(function 또는 프로그램)에 따른 상세한 비용을 보고하는 기능별 비용계산서 (statement of functional expenses)를 추가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인회계사협회(종교법인회계연구회 소관)에서 2001년 5월에 “종교법인회계지침”(안)을 제정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세부적 특징으로는, 앞서 발표된 (구)종교법인회계기준과 달리 잉여금(부족금)처분계산서를 요구하지 않고, 자금수지계산서는 수지계산서로 개칭하며, 자금잉여금조정계산서는 정미재산증감계산서로 확대 개편한 것 등이다. 이것은 별도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서 복식회계와 발생주의(감가상각비 계상 포함)의 적용이 마찬가지로 요구되었다.

4. 선행연구의 검토

종교단체의 회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된 연구방법에 따라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가. 문헌연구

이옥영(1987)은 교회회계의 원시성을 문제 삼고 교회자산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필요한바, 효율적인 교회재무관리와 회계기준 및 회계규정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교회회계가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를 만족시키며 치리자(교직자인 장로·권사와 집사를 말함)와 교역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범교회적으로 교회의 재무서류를 수지계산서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와 잉여금처분계산서까지로 확대하는 교회회계기준의 제정이 필요하고, 개교회차원에서는 회계규정을 정비하여 예산, 구매, 감사업무까지를 포괄하도록 체계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장부조직과 재무서류의 서식안도 제시하고 있다.

김형민(1995)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의 요청을 받아 종래 답습해온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사찰자산의 보호관리와 사찰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기한다는 목적 아래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로의 전환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대한불교조계종 재무회계규칙(안)은 기존의 사학기관의 사례를 준용하여 모범 조문과 함께 재무제표로서 자금운용계산서, 운영수지계산서, 대차대조표, 기금변동계산서의 4종을 열거하고, 각각의 서식을 포함하고 있다.

조현연(2004)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지닌 종교법인이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바람직한 회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모색에 초점을 두었다. 개념적으로 종교법인의 청지기정신 소유와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전환을 토대로 제시된 구체적 방안은 내부통제제도의 정비, 예산제도의 활성화, 외부감사제도의 도입 및 개혁, 통일된 회계기준의 제정 및 시행, 그리고 재무제표의 공시 등이다.

나. 실증연구

이석승(1990)은 개신교 교단의 243개 교회(대도시지역, 중소도시지역, 읍면지역으로 구분)에 대하여 회계실태상황을 설문조사방법으로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내용은 예산의 수립여부와 주체자, 관항목 설정여부, 사용장부의 종류와 회계담당자의 회계전공여부, 회계보고 횟수와 회계보고서의

종류, 감가상각 및 회계감사 여부 등으로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첫째, 대부분의 교회에서 재정부서가 자의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제도는 교회의 기능과 사명을 고려하여 각 부서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근거로 편성 및 집행되도록 체계적이고 통일된 예산 편성지침이 필요하다. 둘째, 개교회의 장부 기장체계는 단순히 현금의 수지 사실만 기록하는 단식부기체계인데 회계전공자로 기장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회계교육을 통하여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 장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회계보고서는 월1회 현금의 수지만 열거하는 현금주의체계에서 벗어나 감가상각제도가 도입된 진실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회계보고서 양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넷째,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도 회계처리에 대한 내부건제제도가 미비한 바, 회계장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는 물론 예산항목의 집행상태도 감사할 것을 제의하였다.

오세한(1995)은 교회재정에 대한 성서적 배경과 역사적 변천과정을 개관한 후 교회재정의 형성구조(수입구조, 지출구조 및 예산구조)와 활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실태조사는 나사렛성결교회의 5개 연회 중 하나인 중부연회에 소속된 110개 교회 중 78개 교회가 총회에 제출한 10년간(1985-1994)의 재정보고서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현금수입 및 각종 지출항목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교인수의 증가보다 현금수입 규모가 더 크게 증가되었는데 이는 성경의 청지기적 신앙생활에 입각한 온전한 현금관의 발로로 생각되는 한편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재정개방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바람직하다. 둘째, 운영비와 목회자사레비가 전체 재정지출의 75%이상을 차지한 반면에 선교비·교육비·봉사활동비 등의 비중이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충실하도록 선교활동 등의 비중을 높이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회의 규모에 관계없이 정기적인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가 필요하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와 함께 내부통제제도의 수립을 통한 효과적 교회재정운영이 요망된다.

최현돌·황호찬(1998)은 과거 수십 년간에 비해 최근 한국교회의 발전이 다소 정체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종교다원화 사회로의 진입, 교단간 분파주의에 의한 폐해,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경직된 사고 등이 있지만 교회경영의 비효율성에 중요 원인이 있다고 보고, 특히 교회 회계정보의 미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회의 회계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교회회계의 현황파악을 위해 전국에서 임의 추출된 238개 교회의 교역자 및 평신도로부터 설문자료를 입수하였는데,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금수지계산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대차대조표의 작성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자금수지계산서 대신으로 활동보고서와 현금흐름표가 작성되도록 하는 재무제표체계의 정비 필요하다. 둘째, 단식부기를 지양하고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현금주의 아닌 발생주의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상설 내부감사를 두는 등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함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보체계를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여섯째, 빠른 시일 내에 통일된 회계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공표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전국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황호찬·최현돌(1998)은 전국에서 임의추출한 224개 교회에서 자금수지계산서를 입수하여 한국교회의 재정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회의 본질과 비전(담임목사의 목회방침)에 충실한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구조조정을 통한 유사기구를 통폐합하고, 수입원(헌금수입이 95.9%)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교회의 고유목적비(예배/교육/선교/봉사비)와 보조비(인건비포함)의 비율이 1:3인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할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교회 내부대상 지출(86.8%)보다 교회 외부대상 지출규모(13.2%)를 늘려 교회의 대사회 지도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김철기(1998)는 종교법인의 회계처리와 감사에 대하여 문헌조사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개신교/불교/천주교의 총 309개 종교법인 중 34%인 105개 종교법인을 표본으로 하였으나 21개(발송 대비 20%, 총모집단 대비 6.8%)만 회수되었다. 대표성에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종교법인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에 대한 강행규정을 두는 것, 종교법인 용 감사지침과 감사보수규정이 마련될 것, 종교법인 회계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종교법인 회계정보의 공개 및 공시제도의 확립, 그리고 회계전문기관 및 학계의 종교회계이론 및 실무 관련 연구개발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조현연·전수영(2002)은 종교법인 회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가설검정방법을 통하여 통일된 종교회계기준이 제정되고 재무제표를 공시할 경우 종교법인의 보고투명성 강화, 회계신뢰성 증가, 복지재정기부금의 증대, 조직운영에 효율적 영향 초래 등 네 가지를 검정하여 모두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 표본은 천주교/개신교/불교의 3대 종교법인에 속한 회계담당자 30명과 일반신도 20명 등 모두 50명이었다. 동 연구결과 건의사항으로 종교법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일정 규모이상의 기부금을 조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공시를 의무화할 것, 종교법인의 회계와 재무보고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목적 적합하도록 할 것, 종교법인의 차이와 무관하게 일관성 있는 회계 및 재무보고기준을 사용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과 본 연구가 다른 점은 구체적인 종교단체 회계지침(안)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이를 위해 주요 종교단체들의 회계제도 실태를 사례조사한 후 이들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개선 방향을 최근 시점에서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III. 우리나라 종교단체 회계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에는 종교단체의 회계제도 관련 규정이 아주 미흡하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정 93.12.30. 문화체육부령 제8호, 최종개정 2000.2.21. 문화관광부령 제36호)의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서 모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3개 종류의 서류(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③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요컨대, 문화관광부는 수지계산서와 재산목록 중심의 단식부기에 의한 예산회계를 전제로 하여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회계처리의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실무계에 자유방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3대 종교단체별 회계제도를 신도가 많은 순으로 사례조사방법(case study methodology)³⁾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불교의 회계제도

불교사찰의 대표로서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대한불교조계종)의 회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은 불교문화의 선전, 포교, 사회, 교육사업 및 기타 사업을 행함으로써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유지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대한불교조계종 법령집, 1995)

종단의 예산회계법(1995.12.4. 개정공표)에 의하면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중앙종무기관 산하기관의 예산(총무원 기획실 소관)과 회계(총무원 재무부 소관)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따로 정하며, 각 종무기관의 종무원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해당 소속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중앙종무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무원 재무부장에 제출하고, 본사는 2월 말일까지 결산보고서를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말사는 2월 10일까지 결산보고서를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무원의 재무부장은 중앙종무기관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종합하여 총괄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즉 불교단체의 회계는 단식회계에 의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제5조) 2004년 1월 현재 특별회계에는 불사특별회계, 적립금특별회계(2003이전의 관람료예치금·부동산처분적립금·임대보증금적립금특별회계의 통합), 교구특별회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행 조계종 총무원의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서) 사례를 지면관계상 서술식으로 제시하면 우선, 세입과목으로 기본재산수입, 불공수입, 불전수입, 4·8절수입, 사업수입, 법요행사수입, 교육연수수입, 관람료수입, 기타수입, 특별수입, 신도교무금수입 등을 두고 있다. 또 세출과목으로 법요행사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분담금, 자산취득비, 수익사업비, 목적사업비, 정보관리비, 기타지출, 특별회계전출금 등을 두고 있다.

사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식회계 방식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예산과 결산을 대비하고 집행율을 제시하는 초보적 형식으로 작성되고 있었다.

3) 본 사례조사의 경우 3대 종교단체에 대하여 대표성 보완차원에서 각각 복수의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발건 사항을 포괄적으로 예시하였다.

둘째, 수입항목의 전기이월금이 예산과 결산상 서로 다르며, 지출항목에 대여금이 나타나고 있고 예비비도 그대로 총괄 항목으로 나타나는 등 부적절한 보고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체계적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2. 개신교의 회계제도

개신교의 지파 중 대한예수교장로회는 1987년 9월 교회사업을 적절히 집행하는데 관련된 예산과 회계 및 계약, 재산관리, 감사를 규정하여 재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전반적인 재정운동을 체계화하여 선교, 교육, 봉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고, 투명하게 보고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교회회계기준”을 제정하였으며, 1999년 9월 최종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교회(총회 산하 개교회를 말함)의 회계처리는 정규부기(복식부기)원칙에 의하되(제29조 제2항)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하지 아니하는 수정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44조).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분한다. 재무제표는 예산대수지결산서, 대차대조표, 잉여금처분계산서, 순자산증감조정계산서, 그리고 동 부속명세서로 열거하면서(제30조 제2항)⁴⁾ 제직회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작성하여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유목적사업 아닌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영리기업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서울 K교회의 결산(예산대수지결산서) 사례를 지면관계상 서술식으로 제시하면 우선, 수입과목으로 경상수입 분류에 주일헌금, 절기헌금, 목적헌금, 과년도수입, 잡수입(수입이자 등)을 두고, 자본수입 분류에 차입금, 적립금인출, 자산처분수입, 건축헌금 등을 두고 있다. 또 지출과목으로 경상지출 분류에 사업비(인건비, 예배비, 선교비, 교육비, 봉사비), 운영관리비(사택관리비, 수도광열비, 공과금, 차량유지비, 통신비, 회의비, 출판비 등), 상회비, 기타비용(지급이자, 건물임차료, 예비비 등)을 두고, 자본지출 분류에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제적립예금, 차입금상환 등을 두고 있다.

사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교회 차원에서는 아직도 복식회계가 행해지지 못하고 단식회계에 의한 수지계산서만 제시되고 있었다.

둘째, 지출 내역에 예배당확장비와 비품구입비 등 자산항목이 기재되고, 나아가 결산서에 예비비라는 부적절한 총괄 항목이 나타나 있었다.

4) 동 규정에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예산대수지계산서와 예산대수지결산서, 잉여금처분명세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 순자산증감조정명세서와 순자산증감조정계산서가 혼용되고 있어 불일치한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각각 후자의 표현으로 통일하여 제시하였음.

3. 천주교의 회계제도

천주교(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는 천주교회의 유지경영, 자선사업과 교육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재정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은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긴요한 과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재정수입은 신자들의 교무금과 헌금에 의존하고 있고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 자산인 교회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재무관리에 관한 각종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규정들은 교구의 기업화를 위해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교구 사목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의 공개를 전제로 하여 이와 같은 규정들은 작성되어야 한다. 교회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예산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예산은 가장 명백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또한 구성원들에게 지지 받는 것이어야 한다. 구성원들로부터의 지지는 교회 재무관리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때 강화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협조와 공헌을 기대할 수 있다.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일치해야 하며 그 편성과 심의의 절차가 엄정해야 한다. 예산의 편성과 이를 승인하는 과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하고, 관련되는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의 최종적인 승인은 주교와 사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 회계규정이 확립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의 엄격한 준수가 요망되며, 회계활동에 대한 감사제도가 확립되어야 하고, 그 감사의 결과는 반드시 보고 되어야 한다. 감사기능을 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선출된 자라야 한다. 이러한 감사는 조직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그 결과가 조직 운영에 대한 개선에 공헌할 수 있도록 소극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조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감사는 교회의 재정성적을 정기적으로 구성원에게 알림으로써 구성원의 자발적인 공헌을 유발해야 한다(한국천주교회 사목회의 의안(10) 교회운영, 1984).⁵⁾

그러나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경우 상시적인 회계규정이 미비하고, 다만 양업시스템(자체개발한 전산회계프로그램)에 의해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복식회계로 매월 결산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말 결산보고서는 감독관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단식회계에 의한 수지결산서만 작성하고 있어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것은 각 성당의 주보에서 수지보고서만 보고하는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행 서울 A성당의 수입지출결산서 사례를 지면관계상 서술식으로 제시하면, 우선 수입지부에 일반수입(봉헌금, 후원금, 목적헌금, 기부금, 부속기관수입, 기타수입(이자수입 등), 유동자산, 유형고정자산, 유동부채를 두고 있다. 또 지출지부에 선교사업운영비(선교비, 성무활동비, 교육비, 자선찬조비, 행사비), 일반운영비(인건비, 여비교통비, 회의비, 운영비, 세금과공과, 복리후생비, 조정 및 기타시설비, 기타), 유동자산, 유형고정자산, 유동부채, 기금대체 등을 두고 있다.

5) 조현연(2004)에서 일부 수정하여 인용하였음.

사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지계산서와 함께 자산 및 부채의 기록이 있으나 당월까지의 수지누계액이 제시되지 않고 있었다.

둘째, 기초의 자산 표시가 불완전하며 전월이월된 현금예금의 합계액이 누락되었고 기중에 수입된 성물과 시설·비품취득분의 자산 인식과 부채의 내용이 미흡하게 기재되고 있었다.

셋째, 일부 사례에서는 합계잔액시산표상 현금과 부채의 잔액이 각각 음수로 나타나는 모순이 있었다.

4. 현행 종교단체 회계제도의 문제점

가. 정부의 회계감독 관련규정 미흡

정부의 주무부처차원에서 종교단체의 공익성을 감안한 회계감독 관련규정이 불충분하다. 문화관광부령으로 공포된 규칙은 종교법인의 설립 및 감독 사무를 규정하면서 회계에 대하여는 수지예산서 및 수지결산서⁶⁾와 재산목록만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단식회계에 입각한 예산회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접수한 보고서의 분석이 미흡하며 자료 자체를 대외비로 하여 이해관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공시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나. 불교회계는 단식회계 수준

불교단체의 회계는 총무원의 예산회계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마다 회계관장 기관(재무부; 예산관장은 기획실)에서 말사—본사—중앙종무기관을 종합하여 총괄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중앙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즉 불교회계는 예산회계와 관련하여 관항목별 계정과목해설서는 있으나 단식회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 개신교는 회계기준에 따라 복식회계처리하면서 감가상각은 미시행

원칙적으로 교회의 회계처리는 정규부기(필자주: 복식부기)방식에 의하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하지 아니하는 수정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분한다. 재무제표는 예산대수지계산서, 대차대조표, 잉여금 처분계산서, 순자산증감조정계산서, 그리고 동 부속명세서로 열거하면서 제직회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작성하여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유목적사업 아닌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영리기업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수지결산서의 양식이 제시되지 않아 운영성과표에 해당하는 수지계산서(경상수지에 국한)인지 또는 현금주의에 입각한 자금수지계산서(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포함)인지가 불분명한데, 수지예산서에 대응한 수지결산서란 용어로 볼 때 주무부처에서는 후자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의 경우 다른 종교단체에 비해 회계처리기준도 제정하고 있어 발전된 편이지만,⁷⁾ 재무제표의 종류에 종교단체의 회계적 특성에 부적합한 잉여금처분계산서는 제외하고, 순자산증감조정계산서도 그 구성내용이 개념상 부정확하고 불분명하여 보다 유용한 현금흐름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개교회 차원에서는 회계적 소양부족으로 수지계산서만 작성하는 경향이 많다.

라. 천주교는 복식회계처리하면서도 회계기준은 미비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의 경우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하며 월말보고서는 자체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복식회계로 작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 회계처리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연말 결산보고서는 감독관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단식회계에 의한 수지결산서⁸⁾만 작성하고 있어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것은 각 성당의 주보에서 수지결산서만 보고하는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IV. 종교단체회계지침(안)의 도출방향 및 구체적 제안

1. 종교단체회계지침(안)의 도출방향

이제 종교단체회계지침(안)을 도출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상술한 현황과 선진국 제도를 고려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현행 종교단체 회계제도의 문제점 개선

앞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행 종교단체의 회계처리는 불교회계는 단식회계 수준이고, 개신교는 회계기준에 따라 복식회계처리하면서 감가상각은 미시행하며, 천주교는 복식회계처리하면서도 회계기준은 미비하는 등 단체별로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복식회계에 의하면서 발생주의를 전체적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재무제표의 종류에서 종교단체의 회계적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하며 서식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 한국회계연구원의 비영리회계지침 반영

2003년 4월 한국회계연구원장 명의로 발표된 비영리회계지침(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의 내용을 종교단체 회계에 반영하여 주요 인식기준과 함께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 운영

7) 교회회계기준에서 조문식으로 주요 원칙을 규정하고 부속명세서의 서식까지 제시하고 있다.

8) 현금주의에 입각한 자금수지계산서를 의미한다.

성과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으로 한다.

한편, 동 비영리회계지침은 정식 제목이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로서 비영리조직 일반에 통일된 회계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나, 운영성과표에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함에 있어 실정세법(법인세법 제3조 제2항)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까닭으로 다음의 문제점으로 인해 규정중심의 종교단체회계 실무 특성상 다소 혼란이 예상된다.

첫째, 지침에서는 이자 및 배당수익, 임대료수익을 고유목적사업수익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이들을 수익사업으로 열거하고 있다.⁹⁾

둘째, 지침에서 사업외수익으로 열거하고 있는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과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¹⁰⁾ 모든 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을 수익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이하다.

따라서 운영성과표에서 고유목적사업수익에 예시되어 있는 이자 및 배당금수익, 임대료수익을 세법실무에 맞추어 수익사업수익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다. 선진국의 종교단체 회계지침 고려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비영리조직 및 종교단체의 회계지침을 고려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미국과 달리 일본처럼 단일의 종교단체회계처리지침을 제정하되, 구체적인 인식기준을 좀더 상술하고 재무제표는 보다 유용한 미국의 양식(대차대조표,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을 채택한다.

라. 개신교(예장)의 교회회계기준 반영

3대 종교단체 중에서는 개신교가 그중 모범적이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교회회계기준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동 기준에 포함된 예산·계약·재산관리·감사 등은 별도의 내부규정으로 다루도록 하고 본 지침(안)에서는 회계 관련 사항만 구체적으로 반영하기로 한다.

마. 실정 세법규정의 고려

종교단체 역시 비영리조직이므로 고유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실정 세법상 과세되므로 구분경리하여 세무 신고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회계를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필요시 고유목적사업회계는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기로 한다.

본 지침(안)에서는 회계실무자가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각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두 번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구분경리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포괄하여 제시하였다.

9) 이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어 고유목적사업수익의 산출에 차이를 초래한다.(법인세법 제29조)

10) 예외로서 예금보험 및 부실채권정리사업에 귀속되는 채권의 매매익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익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바.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안)의 반영

2004년 5월 20일 정부(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공정하게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공개초안)의 명칭으로 발표하였는데, 그 형식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조문식이어서 공무원의 감독 규정체계에 적합하고 공익성을 띤 기관회계로서의 용어와 성격이 비영리종교단체에 부합되므로 이를 적극 고려하였다. 또한 종교단체의 예산회계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는 아니더라도 필수보충정보로서 예산·결산비교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 종교단체 회계지침(안)의 구체적 제안

지면 관계로 제안된 개별 조문은 모두 제시하지 못하고 대강의 골격과 주요 조항별 특징을 서술식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우선, 종교단체 회계지침(안)의 전체적인 구성(전문 62조와 부칙 3조)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제2장 재무보고서(제7조~제9조)

제3장 대차대조표(제10조~제23조)

제4장 운영성과표(제24조~제42조)

제5장 현금흐름표(제43조~제45조)

제6장 주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제46조~제49조)

제7장 자산과 부채의 평가(제50조~제62조)

부 칙 (제1조~제3조)

제1장 총칙에서는 지침의 목적(제1조)과 주요 용어의 정의(제3조), 재무보고의 목적(제4조)과 일반 원칙(제5조) 및 보고실체를 종교단체로 하고, 회계실체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수익사업회계로 3구분한다는 조항(제6조)을 두었다. 그리고 지침의 해석과 구체적인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종교단체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지침의 적용규정(제2조)을 두어 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제2장 재무보고서에서는 그 범위를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규정(제7조)하면서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와 주식으로 열거하였다(제8조). 또한 재무제표의 작성원칙(제9조)에서 재무제표는 이를 회계실체별로 구분한 뒤 합산할 때는 내부거래를 제거함을 명시하고 합계를 전기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제3장 대차대조표에서는 그 구성요소(제10조)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정의(제11조)한 후 자산·부채의 인식기준(제12조)과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제13조)을 규정하면서 양식사례도 제시하였

다.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제14조)하며, 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부채로 분류(제19조)하였다. 특히 자본을 순자산으로 명명하면서 이를 기부자(보조금을 제공하는 정부 등을 포함)가 제시한 제약의 종류에 따라 제약이 없는 순자산,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및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으로 3분류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여기서 제약이 없는 순자산은 기부자가 사용·용도나 사용시점에 대해 제약을 제시하지 않은 순자산으로 하고,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은 기부자가 사용·용도나 사용시점에 대해 일시적 제약을 제시한 순자산으로 하며, 이것은 기부자가 명시한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사용제한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제약이 소멸된다. 그리고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은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이 소멸될 수 없는 순자산으로 하였다(제22조).

제4장 운영성과표에서는 그 구성요소(제24조)로서 수익과 비용을 정의(제25조)한 후 수익·비용의 인식기준(제26조)과 운영성과표의 작성기준(제27조)을 규정하면서 양식사례도 제시하였다. 수익은 고유목적사업 관련성을 고려하여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으로 분류하되(제28조), 특히 사업수익은 종교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금수입, 기부금수입, 수익사업매출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 사용·용도에 제약이 없는 것은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로 분류하여 표시하되, 기부자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제약을 제시한 기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 중 그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증가로 분류하여 표시하도록 한다(제29조). 그리고 논란이 많은 현금수입은 현금납부의 강제성 유무에 따라 현금납부가 강제적인 경우 발생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비강제적인 경우 현금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한다(제30조). 또 기부금수입은 기부자가 이에 대한 제약을 명시하거나 또는 기부금과 관련된 정황을 미루어 보아 사용에 대한 제약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로 분류하여 표시하고, 기부자가 사용에 대한 제약을 제시한 기부금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증가로 분류하여 표시하며, 기부금에 대한 제약이 기부를 받은 회계기간 내에 해제되는 경우 당해 기부금은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로 재분류하여 표시할 수 있다(제31조). 비용은 기능별(프로그램, 관리 및 일반, 기금조성 등)로 구분하되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으로 분류하였고, 그 중 고유목적사업비용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성격별(인건비, 운영비 등)로 구분한 성격별 비용계산서를 필수보충정보로 보고하도록 하였다(제34조).

제5장 현금흐름표에서는 그 정의(제43조)와 함께 현금흐름을 사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3분류하였다(제44조). 또한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제45조)과 더불어 양식사례를 제시하였다.

제6장 주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에서는 주식의 내용과 관련하여 개별 조문의 주식사항 외에 보충적 주식사항(종교단체 회계실체 간 주요거래내용 등)을 예시하였다(제46조). 그리고 종교단체의 특성상 필수보충정보로서 예산·결산비교표, 성격별 비용계산서, 관리책임자산¹¹⁾의 내역,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설명 등 4종을 요구하고 이중 예산·결산비교표는 양식사례도 제시

11) 문화재, 예술품, 역사적 문헌 및 자연자원 중 화폐로 측정 불가능하여 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제12조 제2항)

하였다(제47조). 부속명세서는 대차대조표부속명세서와 운영성과표부속명세서로 구분하되 그 종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제48조).

제7장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서는 각종 자산의 평가기준을 제시하면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경우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제51조 내지 제55조). 다만, 예술품은 상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배제가능규정을 두고 이 경우 수선유지비용과 상각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또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의 구분 기준(제56조)을 두면서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포함)의 평가기준(제57조, 제58조),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제59조), 리스(제60조)와 우발상황(제61조), 그리고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제62조)에 관한 규정도 간략하게 두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문화재, 예술품, 역사적 문헌 및 자연자원 등의 재무제표 계상은 종교단체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일부 과목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부칙 제2조). 또한 현금흐름표의 경우 전기 대차대조표가 선행되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다(부칙 제3조).

V. 결 론

본 연구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경영투명성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된 이래 새로이 부각된 비영리조직 중 종교단체에 대하여 그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상 과제와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다른 연구와 달리 각종 종교단체에 통일된 구체적 종교단체회계지침(안)을 제안하였다(전문 62조와 부칙 3조).

연구 방법으로는 종교단체의 폐쇄성으로 인한 표본의 편중과 임의성을 고려하여 설문조사하지 않고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주로 하였으며, 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 단체의 회계책임자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종교단체회계제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정부의 주무부처차원에서 종교단체의 공익성을 감안한 회계감독 관련규정이 불충분하다. 둘째, 불교단체의 회계는 단식부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셋째, 개신교 교회의 회계처리는 원칙적으로 정규부기(복식부기)방식에 의하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하지 아니하는 수정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넷째, 천주교는 복식회계를 행하면서도 회계기준은 미비하였다.

따라서 종교단체회계지침(안) 제정을 위한 다음 몇 가지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행 종교단체 회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즉 복식회계에 의하면서 발생주의를 전체적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재무제표의 종류에서 종교단체의 회계적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하며 서식도 정비한다.

둘째, 한국회계연구원의 비영리회계지침을 반영한다. 2003년 4월 한국회계연구원장 명의로 발표된 비영리회계지침(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의 내용을 종교단체 회계에 반영하여

주요 인식기준과 함께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으로 한다.

셋째, 선진 외국인 미국과 일본의 비영리조직 및 종교단체의 회계지침을 고려한다. 그 방향은 미국과 달리 일본처럼 단일의 종교단체회계처리지침을 제정하되, 구체적인 인식기준을 좀더 상술하고 재무제표는 보다 유용한 미국의 양식(대차대조표,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을 채택한다.

넷째, 개신교(예장)의 교회회계기준을 반영한다. 3대 종교단체 중에서는 개신교가 그중 모범적이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교회회계기준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되, 예산·계약·재산관리·감사 등은 별도의 내부규정으로 다루도록 하고 본 지침(안)에서는 회계 관련 사항만 구체적으로 반영하기로 한다.

다섯째, 실정 세법의 비영리법인 관련규정을 고려한다. 종교단체 역시 비영리조직이므로 고유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실정 세법상 과세되므로 구분경리하여 세무 신고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회계를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필요시 고유목적사업회계는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기로 한다.

여섯째, 2004년 5월에 공표된 공공부문의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안)을 반영한다. 정부(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공정하게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공개초안)의 형식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조문식이어서 공무원의 감독 규정체계에 적합하고 공익성을 띤 기관회계로서의 용어와 성격이 비영리종교단체에 부합되므로 이를 적극 고려하였다. 또한 종교단체의 예산회계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는 아니더라도 필수보충정보로서 예산·결산비교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된 종교단체회계처리지침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한국회계연구원에서 제정된 다음에 이를 일본처럼 별도의 종교법인법(가칭)이나 주무부처(문화관광부)의 감독규정(시행규칙 또는 고시)에 인용조항을 두어 모든 종교법인의 결산보고 시에 이를 반드시 준거하도록 제도화함이 필요하다.¹²⁾

둘째, 회계처리지침의 제정 외에 이를 제대로 적용하여 재무제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 또 횡령 등 부정과 오류가 사전에 방지되도록 내부통제가 잘 확립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도록 종교단체의 (내부)감사 중 1인 이상을 공인회계사자격자로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술한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졌더라도 현금 또는 기부한 신도, 청지기로서 운영책임을 진 목회자와 치리자(또는 제직회), 그리고 사회대중과 감독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시되지 않으면 유용성이 없는 바, 상장법인¹³⁾ 못지않게 공익성이 큰 종교단체는 몇몇하게 온·오프 라인으로 일정 장소(종교단체 자체 및 감독기관 포함)에 재무제표를 상시 공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12) 유사 사례로 학교법인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동 특례규칙에서 제도화되고 있으며, 법인 아닌 소규모 종교단체의 경우 강제하지 않더라도 필요시 행정지도에 의해 준용토록 하던 것이다.

13) 상장법인의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등에서 항상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도록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규모를 현금 등 연간 수입규모와 자산·부채의 측면에서 총량을 파악한 통계가 없어 회계불투명에 대한 세간의 짐작을 구체화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둘째, 종교법인의 회계제도 전반(예산, 내부통제, 감사, 공시 포함)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고려하였으나 사전조사(pilot test)를 위한 관계자 면담에서 기존의 실증연구들이 지닌 표본의 임의성과 답변의 부정확성을 탈피하기 어려움을 인식하여 실행하지 못하고 소수의 사례조사에 그친 점이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과제로는 종교법인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제자료와 설문조사를 병행한 실증연구를 하는 것과 본 연구의 결과물로서 도출된 종교단체회계지침(안)을 문화관광부의 지도 아래 종교단체들이 적용한 결과에 대한 보완 연구를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국세청. 2004. 「국세통계연보」.
- 김길조·박충환. 1998. “비영리법인의 회계정보공시제도 개선방안”. 한국회계학회 하계학술연구발표 논문집. 1-24.
- 김철기. 1998.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에 관한 연구—종교법인을 중심으로”. 연세대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 김형민. 1995. 「대한불교조계종 재무회계규칙(안)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연구」.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4. 「법령집」.
- 문화공보부. 1989. 「한국의 종교」. 삼영.
- 박충환. 2003.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세무—사회발전을 중심으로」. 제2판. 법문사.
- _____. 2002. 「사립대학의 외부감사제도 개선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학위논문.
- 배길수·정석우·박충환. 2000.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작성기준」. 연구보고서 제4호, 한국회계연구원.
- 손원익. 1995.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향」.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 양대석. 2003. 「교회회계의 이론과 실무」. 동문.
- 오세한. 1995. 「교회재정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수원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규. 2003. 「정부 및 비영리조직의 회계」. 선학사.
- 이석승. 1990. 「교회회계제도의 적용에 관한 연구」. 경남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영. 1987. “교회 재무보고체제 확립에 관한 소고”. 회계 제23호 : 97-109.
- _____. 1991. 「교회재무관리실무」. 형설출판사.
- 이운재. 1997. 「현대정부 및 비영리회계」. 박영사.
- 전중열·정병수·박충환. 2002. 「우리나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재무보고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회계연구원.
- 정용근. 2001.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외부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10권 제1호 : 1-34.
- 조창원. 2001. “교회재정 투명성을 위한 제언”. 공인회계사(6) : 55-58.
- _____. 2001. “바람직한 교회회계 개선방안 모색”. 공인회계사(7) : 78-81.
- 조현연. 2004. 종교법인의 바람직한 회계시스템 구축. 공인회계사 : 11-20.
- 조현연·전수영. 2002. “종교법인의 회계 및 재무보고 설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세무와회계정보저널. 제2권 제2호 : 149-175.
- 주인기·정병수. 1995. “비영리공익법인의 회계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공인회계사회.
- 최현돌·황호찬. 1998. “우리나라 교회회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기독교사상, 제474호 : 87-111.
- 한국회계연구원. 2003.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
- 한완상(편). 1988.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대한기독교출판사.
- 황호찬·최현돌. 1998. “한국교회의 재정관리 현황 및 개선을 위한 연구”. 기독교사상, 제475호 : 93-109.

-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71. *Report of the Committee on Accounting for Not-for-Profit Organizations*, Supplement. Vol. 46.
-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1978. Statement of Position(SOP) 78-10, *Accounting Principles and Reporting Practices for Certain Nonprofit Organizations*.
-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1994. Statement of Position(SOP) 94-3. *Reporting of Related Entities by Not-for-Profit Organizations*.
-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1998. SOP 98-2. *Accounting for Costs of Activities of Not-for-Profit Organizations and State and Local Governmental Entities That Include Fund Raising*.
-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2004. *AICPA Audit and Accounting Guide : Not- For-Profit Organizations*.
- Anthony, R. N. 1978. Financial Accounting in Nonbusiness Organizations : An Exploratory Study of Conceptual Issues. *FASB Research Report*.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1980.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 4.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by Nonbusiness Organizations*.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1985.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 6. *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1987.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93. *Recognitions of Depreciation by Not-for-Profit Organizations*.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1993.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16. *Accounting for Contributions Received and Contributions Made*.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1993.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17. *Financial Statements of Not-for-Profit Organizations*.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1995.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24. *Accounting for Certain Investments Held by Not-for-Profit Organizations*.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1999.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36. *Transfers of Assets to a Not-for-Profit Organization or Charitable Trust That Raises or Holds Contributions for Others*.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1978.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1.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by Business Enterprises*.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2003. Current Text : Accounting Standards. Vol. II(Industry Standards), 2003-2004 Ed.
- Hay ,L. E. 2000. *Accounting for Governmental and Nonprofit Entities*. Irwin.
- Larkin, R. F .2003. *Not-for-Profit GAAP*. Wiley.
- Listro , J. P. 2000. *Accoun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s*. Kendall/Hunt.
- 宗教法人会計研究会. 1998. 「宗教法人会計の基本と税務」. 税務経理協会.
- 白井宏三郎. 2001. 「宗教法人の会計と税実務 Q&A」. 清文社.
- 平野 武・斉藤 捻. 2001. 「宗教法人の法律と会計」. 晃洋書房.
- ナニワ監査法人. 2003. 「宗教法人の会計と税務」. 清文社.

Improvements of Accounting Treatment and Financial Reporting for Religious Organizations in Korea*

—A Study for Setting the Accounting Guide to Religious Organizations—

Kwang-yoon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problems of accounting treatments and financial reporting for religious organizations which are nonprofit organizations but peculiar in some aspects, and to provide underlying direction for preparing accounting guides in Korea.

Research methodologies applied are archival and case studies, not questionnaire survey considering the closed nature of religious organizations, and also include direct interview with accounting employees. As a result of the study, various problems related to accounting and reporting for religious organizations are discovered as follows :

First, supervisory regulations concerning religious accounting of governmental authorities are insufficient. Second, accounting level of buddhist temples is that of single entry bookkeeping. Third, protestant christian churches make use of modified accrual basis which adopts double entry bookkeeping in principle, but does not apply depreciation on tangible fixed assets. Fourth, catholic churches utilize double entry bookkeeping, but are very poor in stipulating accounting guidelines.

Coping with problems mentioned above, major improvements for preparing accounting guides to be made have been excavated as follows :

First, the problems of accounting for religious organization explored above should be solved.

Second, the accounting guideline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by Korea Accounting Institute should be reflected.

Third, the accounting guides to nonprofit organizations or religious organizations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hould be considered.

Fourth, the Church Accounting Standards by presbyterian christian churches as exemplar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ifth, statutory tax laws regarding nonprofit entities, if possible, should be applied.

Sixth, the most recently proposed Local and Municipal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mirrored.

<Key words> Nonprofit Accounting, Accounting for Religious Organizations, Religious Accounting

* This research has been supported by Ajou University and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Professor, Business School, Ajou University, kimkyn@ajou.ac.kr, 011-9279-4883